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53
----------	-----

2020. 10. 23.(금)  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0년 10월 5일
- 나. 발 의 자 : 이상식 의원 등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6일
- 라. 상정일자 : 제386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(2020년 10월 14일 상정의결)
- 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상식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·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국방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- 국방산업계획의 수립·시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우경수)

#### 가. 제출배경

- '20년 국방예산 50조원 돌파, 방위산업이 국내 생산액 17조원을 초과 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틈새시장 및 판로개척 필요성 대두
- 기업의 방산분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별 센터\* 개소 中(각시도)
  - \* '21년 상반기 충북 국방벤처센터 설립 예정
  - ※ 군납기업 : 2005년 2업체 → 2017년 141업체 / 우리 도 21개 기업(그린광학 등)
- 우리 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을 방위산업으로 확산, 고도화 지원 필요
- 도내 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함

#### 나. 주요 검토내용

-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'국방산업\*' 및 '국방 중소·벤처기업\*\*'의 정의를 규정함

\* 국방산업 : 「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 
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,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 
 \*\* 국방 중소벤처기업 :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「중소기업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

- 안 제3조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
- 안 제4조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국방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함
- 안 제5조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, 안 제6조는 보조금 등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

- 안 제7조와 제8조는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안 제9조는 국방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등에 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방위산업은 튼튼한 안보를 건설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첨단 기술개발을 견인하고 방산수출을 일궈내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임
- 본 조례안은 충북 도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이나 소재 부품 장비(소부장)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
- 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시행, 사업비 지원,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등 국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##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. 끝.

##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소재·부품·장비 기업이 국방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,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국방산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.
  - 가.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민·군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
  - 나.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
  - 다.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
2. “국방 중소·벤처기업”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·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 수립)**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국방산업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국방산업 육성사업)**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국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 육성 사업
2.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
3.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
4. 국방산업 국내외 시장 개척 사업
5. 산·학·연·관·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
6. 국방클러스터 조성 사업
7.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1. 국공립연구기관
2.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·출연한 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학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
6.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

**제6조(국방산업 육성 지원)**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.

1.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
2. 국방 중소기업·벤처기업의 신기술·핵심기술·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
3.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지원

4. 산·학·연·관·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
5.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
6.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7조(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)**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
2. 국방 중소·벤처기업 육성
3.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
4.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
5.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
2. 국방 관련학과 교수, 국방관련 중소·벤처기업 임원
3. 육군, 해군,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4. 국방관련 학회, 협회,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5.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의회의 운영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국방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포상)** 도지사는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, 일자리 창출,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

제3조(민·군기술협력사업) ① 정부는 민과 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민·군기술개발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민·군겸용기술개발사업: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, 부품,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

나.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: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과 군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가장 우수한 기술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사업

다.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: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 등 민과 군이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체계와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

라.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: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비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사업

2. 민·군기술이전사업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
가. 민·군기술적용연구사업: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

나. 민·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: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

3. 민·군규격표준화사업: 민수규격과 국방규격의 표준화 사업

4. 민·군기술정보교류사업: 민과 군의 연구개발 성과, 전문기술인력, 연구개발 장비·시설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교류를 촉진하는 사업

## □ 방위사업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8. "방위산업"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·수리·가공·조립·시험·정비·재생·개량 또는 개조(이하 "생산"이라 한다)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.

## 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 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

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## 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

제2조의2(벤처기업의 요건)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일 것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
  - 가.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(이하 이 목에서 "투자금액의 합계"라 한다)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
    - (1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(이하 "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"라 한다)
    - (2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(이하 "벤처투자조합"이라 한다)
    - (3)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(이하 "신기술사업금융업자"라 한다)
    - (4)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(이하 "신기술사업투자조합"이라 한다)
    - (5) 삭제 <2020. 2. 11.>
    - (6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
    - (7)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(8) 투자실적, 경력,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
나. 기업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  
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)의 연간 연  
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 
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
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. 다만, 연간 총매  
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 
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다.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[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(3)의 요  
건만 적용한다]

(1)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(이하 "기술보증기금"이라 한  
다)이 보증(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)을 하거나, 「중소기업진  
흥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"중소벤  
처기업진흥공단"이라 한다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  
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(대출가능  
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)할 것

(2) (1)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  
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
(3) (1)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  
을 것

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(3)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 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사업개요

-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·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컨설팅, 기술개발(R&D), 판로개척 등 산업 전주기를 방위산업과 연결하여 코로나-19 경제위기 파고극복 지원과 이를 토대로 충북경제 4%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비용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국방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의 지원 사업비

## 3. 관련 조문

- 안 제6조(육성지원사업) 제1호~6호
  1.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
  2. 국방 중소·벤처기업의 신기술·핵심기술·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
  3.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지원
  4. 산·학·연·관·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
  5.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
  6.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충북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비

나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1년~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다. 추 계 결 과 :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연 400,000천원 소요

※ 산출 기초

- 우수기술 보유업체 기술개발(R&D) 지원(40,000천원 X 5업체 = 200,000천원)
- 협약기업 홍보 및 컨설팅 지원(6,000천원 X 20업체 = 120,000천원)
- 국방벤처센터 매니저 인건비(40,000천원 X 2인 = 80,000천원)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## 5. 작성자 : 신성장산업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

## 6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충북국방벤처센터 지원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재원 조달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	지방세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						